

<틀입 1>

경로당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지침 발췌)

■ 보조금 회계 관련 서류

1. 금전출납부
2. 경로당 통장
3. 수입 및 지출증빙서류 등

■ 회계장부 기록

1. 경로당 관련 모든 세입세출은 금전출납부에 기재
2. 금액은 반드시 통장으로 관리
3. 통장의 입출금 상황이 금전출납부에 동일한 날짜로 기재
4. 장부를 찢거나 수정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훼손하면 안됨.
5. 매월 말 장부를 마감하고 월별 지출내역을 정리
6. 수입과목은 보조금 수입(운영비, 난방비, 기타)로 기재
7. 지출과목은 난방비, 운영비로 구분 기록

《금전출납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수입 과목 : 보조금 수입(운영비, 난방비 등)
 - o 보조금 수입 : 시군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운영비, 난방비 등)
 - o 이월금수입 : 월수입액 - 월지출액 = 이월금
2. 지출과목
 - o 난방비 : 경로당 보일러 연료 및 심야전기 보일러 사용 요금
 - o 운영비
 - 공과금 :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우편료
 - 회의비 : 총회, 이사회, 월례회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및 다과, 음료수대 등
 - 사무비(수용비)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통신, 운반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 분담금지출 : 지회에 납부하는 분담금 등
 - 기타운영비 : 상기외의 기타 지출 * 단체 회식 · 여행 비용 지출 금지

2011~2020 경로당 운영비 요율

	계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비고
2011년	100%	40%	6%	54%	
2012년	100%	51%	9%	39%	
2013년	100%	21.5%	5.4%	73.1%	
2014년	100%	28%	7%	65%	
2015년	100%	0%	5%	95%	
2016년	100%	0%	5%	95%	
2017년	100%	0%	5%	95%	
2018년	100%	0%	5%	95%	
2019년	100%	0%	5%	95%	
2020년	100%	0%	5%	95%	

경로당 운영비 · 냉방비 · 난방비 지출 요령

□ 공통사항

- 경로당 보조금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분 지원하는 것
- 보조금에는 정산과 감사가 따름 부당지출시 반환
- 통장에 입금된 지원금 이외에는 지출 삼가
 - 예금이자, NH체크할인 등 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액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KT(전화)요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반드시 자동이체신청 지출
-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 지출 원칙
- 모든 거래는 거래내역을 지출품의서/결의서에 기록
영수증을 그 날짜에 첨부(붙여서) 총무님, 회장님 도장을 날인 한 후 회계서류 보관 관리
- 현금 지출 금지, (계좌이체 가능)
- 현금출납부 기록시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구분 작성관리

□ 운영비 지출

-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출의 주요 경비
- 기본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와 경로당의 소규모 물품구입 및 수선 등이 가능
 - TV, 냉장고 등 자산취득 목적 물품구입은 운영비로 지출불가
- 경로당에 필요한 부식비 지출 가능
 - 식당에서 먹는 식대비, 단체관광 경비 지출시 반환금으로 자체경비로 반납 하셔야 합니다.
- 대한노인회지회분담금 지출은 가능
※ 고성읍경로당분회비 지출은 불가함. 자체경비에서 지출

□ 냉방비 지출

- 냉방비는 기본적으로 7·8·9월 전기요금과 냉방기구 수리(에어컨 냉매충전 등)

냉방비에서 에어콘, 선풍기 구입 불가

**** 전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100,000원 지원.**

-7. 8. 9월 전기료 지급 후 남는 잔액은 타용도로 지출불가

회계연도 12. 31일 이후 반납

- 전기요금이 운영비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냉방비 통장 개설 없이 운영비 통장으로 냉방비가 입금 됨
- **냉방비 잔액을 운영비로 지출 불가 반드시 잔액반납**
 - 냉방비 보조금 자금관리 철저

□ 난방비 지출

- 난방비는 도시가스, 기름보일러 난방유류 구입비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비를 난방비 통장에 자동이체 바람
(기름보일러 기름 구입은 동절기 1.2.3.월, 10.11.12월 중 구입가능)
※ 하절기 난방유류 구입 및 지출 불가
- 난방비 통장에서 난방유류외 경로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불가
난방비와 운영비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
잘못 지출시 체크카드를 취소 후 금액 반환
- 붙임 **경로당 보조금 정산기준**을 경로당에 비치하여 집행시
참고하여 지출, 임원변경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조치
- 실제 경로당 보조금을 집행하시는 회장, 총무님께서는 붙임 **경로당 보조금 정산기준**을 잘 숙지 하셔서 2020년 경로당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경로당 회원에게도 집행기준을 인지시켜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민생활담당
☎055-670-501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 제과), 02-2110-3307~8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큐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부 칙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